파주시공고 제2026-3065호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예산으로 지급하는 정책수당을 지류형 지역화폐로도 발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수당의 지급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객 등의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류형 지역화폐 발행 근거(안 제4조, 제4조의3)

나. 가맹점 준수사항(안 제6조의2)

다. 판매대행점 수수료 관련 사항(안 제9조제4항)

라. 지류형 지역화폐 취급 관련 사항(안 제9조의2, 제9조의3)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2월 17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민생경제과 민생경제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차고동 2층 민생경제과(우 10932)

○ 전화: 031-940-4522 / 팩스: 031-940-4529 / 이메일: gliptide1@korea.kr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

PAJU

➡ 민원인 편의고려, 임의서식임(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 자유롭게 제출)